

[별표 2] 사외이사 활동내역

I. 제 19기 제 1차 정기 감사위원회

: 2014년 3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안전통지일 2014년 3월 12일

항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김형진	임병철	빈센트 카멜링크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감사보고서 - 정기주총 보고안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 안건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 안건 (2014년 감사계획)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4호 안건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II. 제 19기 제 1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014년 3월 20일 오전 9시 50분, 안전통지일 2014년 3월 18일

항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임병철	빈센트 카멜링크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불참 (출장)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찬성	-	가결

Ⅲ. 제 19기 제 2차 정기 이사회

: 2014년 3월 20일 오전 10시, 안전통지일 2014년 3월 18일

항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고
1. 사외이사 성명	리지아 토레스	김형진	임병철	빈센트 카멜링크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출장)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2013년도 제 1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나. 2호 안건 (2013년도 제 18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다. 3호 안건 (2013년도 경영진 성과평가 및 단기 성과급 지급(안) 확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라. 4호 안건 (2014년도 경영진 평가 및 보상체계(안) 확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마. 5호 안건 (경영진 평가 및 보수 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바. 6호 안건 (건당 3억원을 초과하는 경비 지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사. 7호 안건 (제 18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아. 8호 안건 (제 18기 정기 주주총회 의안 상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IV. 제 19기 제 3차 임시 이사회

: 2014년 3월 20일 오전 11시 30분, 안전통지일 2014년 3월 18일

항목	사외이사 활동내역				비고
	리지아 토레스	임병철	전영교	빈센트 카멜링크	
1. 사외이사 성명	리지아 토레스	임병철	전영교	빈센트 카멜링크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출장)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4.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선임 사외이사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나. 2호 안건 (2014년도 경영진 보수 및 수당 결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V. 이사회의 연간 누적 활동내역 (2014.01 ~)

사외 이사명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시간	
	개최	참여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목표	실적
			개최	참여	개최	참여		
리지아토레스	3	3	-	-	-	-	-	-
김형진	2	2	1	1	-	-	-	-
임병철	3	3	1	1	1	1	-	-
전영교	1	1	-	-	-	-	-	-
빈센트카멜링크	3	1	1	1	1	0	-	-

VI. 사외이사 대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 당사 사외이사는 모회사인 (주)신한금융지주 및 BNP 파riba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사외이사는 당사 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당사의 경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수시로 사외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함

VII.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여부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충족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임원 자격(자본시장법 제 24 조)에 관한 결격사유는 없으며, 사외이사 자격조건(자본시장법 제 25 조 제 5 항)과 관해서는 일부 사외이사에 한해 계열회사 상근임직원(4 호)에 해당하는 결격요건이 있으나, 위 내용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 45 조 제 2 항 및 동법시행령 제 51 조 제 2 항 2 호 라목 후단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 39 조 제 2 항에 따라 검직 가능함
2. 적극적 요건	충족	금융투자회사등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 제 2-3 조제 3 항 충족

* 당사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선임됨

VIII.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비영리법인등에 기부금등 지원내역

* 당사 사외이사는 모회사인 (주)신한금융지주 및 BNP 파리바의 임직원임